4 부채 / 채무 / 채권

4-1. 통합부채 현황

- 통합부채는 지방자치단체,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기업,「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출자·출연기관의 부채를 통합하여 산정한 부채입니다.

  ▸ 통합부채는 산정결과 확정 후 별도 수시 공시('18.10. 예정)

4-2. 지방자치단체 부채 현황

- 부채란 금융기관의 채무를 포함하여 향후 지방자치단체가 지급의무(퇴직금, 미지급금, 보관금 등)가 있는 것을 복식부기 형태로 표시한 것으로, '4-6. 지자체 채무 현황'의 지방채무와 '4-3. 지방공기업 부채' 중 직영기업(공기업 특별회계)의 부채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우리 금정구의 부채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백만원, %)

구 분	2016년	2017년	증 감	비고
자산(A)	1,040,897	1,081,684	40,787	
부채(B)	11,159	8,893	-2,266	
자산대비부채비율 (B/A*100)	1.07	0.82	-0.25	

▸ 발생주의 복식부기회계 기준

▸ 부 채 : 유동부채, 장기차입부채, 기타비유동부채

- 유동부채 : 단기차입금, 유동성장기차입부채, 기타유동부채 등
- 장기차입부채 : 장기차입금, 지방채증권
- 기타비유동부채 : 퇴직급여충당부채, 장기예수보증금 및 미지급금 등

▸ 자 산 : 유동자산, 투자자산, 일반유형자산, 주민편의시설, 사회기반시설, 기타비유동자산

4-3. 지방공기업 부채 현황

- 우리 금정구는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4-4. 출자·출연기관 부채 현황

우리 금정구의 출자·출연기관 부채는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백만원, %)

구 분		2016년				2017년			
		자산 (A)	부채 (B)	자본 (C)	부채비율 (B/C)×100	자산 (A)	부채 (B)	자본 (C)	부채비율 (B/C)×100
합 계		0	0	0	0	739	19	720	2.62
출연기관	소 계	0	0	0	0	739	19	720	2.62
	금정문화재단	0	0	0	0	739	19	720	2.62

4-5. 우발부채 현황

우발부채는 상황의 변동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부채로 바뀔 가능성이 있는 부채를 의미하며, 우리 금정구는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4-6. 지자체 채무 현황

지방채무란 지방자치단체가 자치단체 권한 중의 하나인 지방세 과세권을 담보로 하여 사업 투자재원을 조달하는 채무를 의미합니다(상환기간은 1회계연도를 넘어서 이루어짐). 우리 금정구는 은행 채무를 포함하여 어떤 종류의 채무도 존재하지 않습니다.

※ 지방채무와 부채의 차이점

지방채무(local debts, municipal debts)는 현금의 지급의무가 있는 것으로 지방재정법은 차입금, 지방채증권 등으로 정의하고 있음

반면에 부채(liabilities)는 발생주의 복식부기 회계원리에 따라 경제적 자원을 상환할 의무가 발생하면 발생한 시점부터 부채로 계상하는데, 지방채무 뿐만 아니라 임대보증금, 퇴직금 충당금, 카드결제로 인한 미지급금, 선수금 등도 부채에 포함됨

지방채무는 현금주의 단식부기 기준, 부채는 발생주의 복식부기 기준으로 인식하는 차이가 있으며 부채가 지급의무의 대상을 더 폭넓게 받아들이고 있어 지방재정 건전성을 파악하는 데 장점이 있음

4-7. 지방채발행 한도액 및 발행액

(단위 : 백만원, %)

구 분	연 도 별				
	2013	2014	2015	2016	2017
지방채발행한도액(A)	3,600	1,800	1,900	2,000	2,100
발행액(B)	0	0	0	0	0
발행비율(B/A*100)	0	0	0	0	0

- 지방채발행한도액은 행정안전부에서 매년 지방자치단체에 통보하는 한도액이며, 발행액은 당해연도 실제 발행액임
- 2013년부터 지방채발행한도액은 기본한도액에 별도한도액을 더한 금액으로 산정

  * 별도한도액 = 지역개발채권 발행액 + 도시철도채권 발행액 + 일정요건 충족 차환액

  ** 일정요건충족 차환액 = 당해연도 지방채 상환총액의 25% 이내이고, 이율은 한국은행이 발표하는 금융기관의 가중평균금리 중 '공공 및 기타대출'의 금리 이내인 경우의 차환액

4-8. 일시차입금 현황

일시차입금이란 지방자치단체가 예산을 지출함에 있어 일시적으로 예산상 현금의 부족이 생길 때 해당 회계연도의 수입으로 상환한다는 전제하에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단기간 차입하는 자금을 의미합니다. 우리 금정구는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4-9. 민자사업 재정부담 현황

민자사업 재정부담이란 민간투자사업(BTL, BTO 등)으로 인하여 자치단체가 민간사업자에게 지급하는 임대료와 재정지원금 등을 의미합니다. 우리 금정구는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4-10. 재정건전성관리 계획 · 이행현황

지방재정건전성관리계획은 「지방재정법」 제87조의3에 근거하여 작성되며 이는 '17년도 통합부채와 우발부채의 변동 상황, '18년도 통합부채와 우발부채 추정액, '18~'22년도 기간에 대한 통합부채와 우발부채의 변동전망과 근거 및 관리계획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 지방재정건전성관리계획 작성지침에 따라 별도 수시 공시('18.11.예정)

4-11. 보증채무 현황

보증채무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공익을 위해 필요한 경우 미리 지방의회 의결을 받아 지급을 보증하는 행위로서 우리 금정구는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4-12. 채권 현황

채권이란 지방자치단체의 사업계획에 따라 사업자 및 개인에게 지원(융자)하고 정해진 기간 안에 채무자로부터 회수되거나 사법적 계약에 의한 증권입니다. 우리 금정구가 보유하고 있는 채권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백만원)

구 분		'16년도 현재액 (A)	증 감 액			'17년도 현재액 (A+B)
			계 (B=C-D)	발생액(C)	소멸액(D)	
합 계		**4,730**	**-206**	**424**	**631**	**4,523**
일 반 회 계		3,509	-1	1	2	3,508
특별회계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481	-236	291	527	246
	지하수관리특별회계	0	0	0	0	0
	기반시설특별회계	0	0	0	0	0
	재정비촉진특별회계	0	0	0	0	0
	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대지보상특별회계	0	0	0	0	0
	주민소득지원및생활안정기금특별회계	380	0	63	63	380
	주차장특별회계	0	0	0	0	0
기금회계	사회복지기금(사회복지계정)	0	0	0	0	0
	사회복지기금(노인복지계정)	0	0	0	0	0
	사회복지기금(국민기초생활보장계정)	360	30	70	40	390
	양성평등기금	0	0	0	0	0
	식품진흥기금	0	0	0	0	0
	재난관리기금	0	0	0	0	0
	옥외광고정비기금	0	0	0	0	0

▶ '17년 결산결과 채권현재액보고서의 회계별 채권관리현황

❖ 채권 연도별 현황

(단위 : 백만원)

구 분	연 도 별				
	2013	2014	2015	2016	2017
채권현황	4,173	4,394	4,368	4,730	4,523

▶ 연도별 결산결과 채권현재액보고서 회계별 채권관리현황의 기준년도 현재액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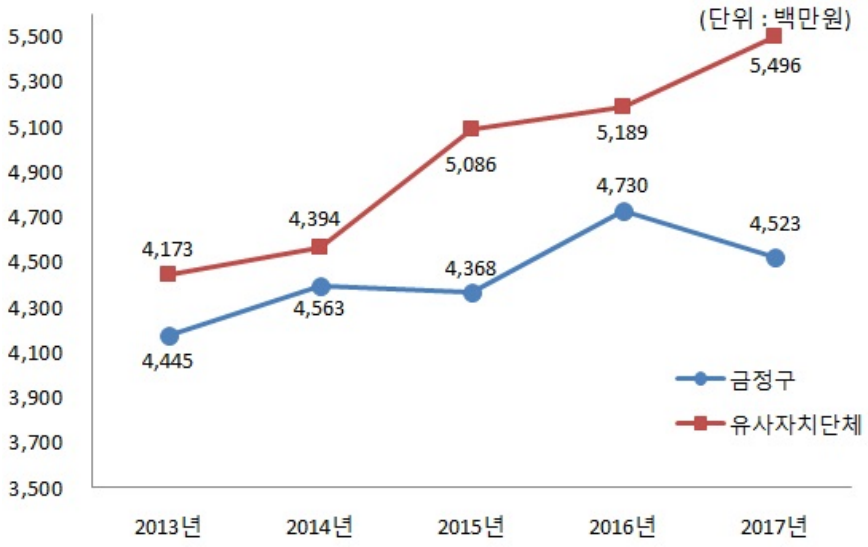
유사 지방자치단체와 채권현황 비교